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2. 11. 26.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면히 퇴직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2. 11. 26.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22. 11. 2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군법무관·군의원·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간 근무한 경우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자격증 요건에 한함)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되, 관련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 **학위논문**으로 판단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22. 11. 26.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2. 4. 22.)**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9. 4. 21. 부터 2022. 4. 21.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2. 8. 31. 예정)** 전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0. 9.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2. 8. 3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2022. 11. 26. 예정)**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사전등록 방법 : 본 공고문 8페이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참고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2. 8. 3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붙임1] 참조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응시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기준 >

- ①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③직무역량 및 성과 ④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22. 8. 3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기준 >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불합격 기준 >

-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3. 가산점 적용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해당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2. 6. 29.(수)	2022. 7. 23.(토)	2022. 8. 24.(수)
서류전형	-	-	2022. 10. 21.(금)
면접시험	2022. 11. 4.(금)	2022. 11. 22.(화)~11. 26.(토)	2022. 12. 30.(금)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 2022. 6. 2.(목) 09:00 ~ 6. 7.(화)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 취소마감일 : 2022. 6. 10.(금) 18:00

안 내 사 항

- 응시수수료(7천원)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5.25.(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고, 2020. 9.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2. 8. 3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HSK, 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 받으려는 응시자
 -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 기 간 : 2022. 5.1.~10. / 6.1.~10. / 7.1.~10. / 8.1.~10.에 등록가능

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기 간 : 2022. 8. 24.(수) 09:00 ~ 8. 31.(수)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내 용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서류전형 등록 시 기재·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서류전형/면접시험 →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업로드
 - 기 간 : 2022. 10. 21.(금) 09:00 ~ 10. 28.(금) 18:00
 - 내 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일시·장소 등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7. 기타 참고사항

- 가.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 호봉이 결정됩니다.

<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에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 및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5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7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직위 이동은 제한)
- 라.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마.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직무 단위 선발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로 배정될 예정이며, 직렬(류) 단위 선발 최종 합격자는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바. 필기시험 점수를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22.6.29. 예정)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기출문제(최근 3년)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교시별 시험응시 후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모의고사’에서 시험응시 클릭

- 아.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 - 8376, 8245, 8374

8.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 : 150명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 1] 확인

《직렬(류)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법무행정	행정주사보(법무행정)	국가인권위원회	1	701
인사조직	행정주사보(인사조직)	국가인권위원회	1	702
일반행정	행정주사보(일반행정)	인사혁신처	2	703
기계분야 연구 및 평가	공업주사보(일반기계)	방위사업청	1	704
감염병 및 질병관리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질병관리청	1	705
의약품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5	706
수의	수의주사보(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2	707
의약품 안전관리	약무주사보(약무)	식품의약품안전처	15	708

《직무분야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반부패·청렴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행정주사보(일반행정)	국민권익위원회	1	709
통상분야 협상	행정주사보(국제통상)	해양수산부	2	710
금속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연구사(금속)	산업통상자원부	1	711
농업기계	공업주사보(일반기계)	농림축산식품부	1	712
기계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연구사(기계)	산업통상자원부	1	713
기록연구	기록연구사(기록관리)	고용노동부	1	714
위성자료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1	715
기상관측기술개발 및 수치모델 연구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1	716
관측기술 개선연구 및 연구실험장비 운영관리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1	717
인공지능예보연구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2	718
기후변화감시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1	719
지진 현장경보체제 기술개발	기상주사보(지진)	기상청	1	720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노무관리_안동대학교	전문경력관 나군	교육부	1	721
노무관리_강원대학교	전문경력관 나군	교육부	1	722
식물신품종 심사	농업연구사(작물)	농림축산식품부	1	723
축산경영·환경자원	농업주사보(축산)	농림축산식품부	2	724
농업시설 에너지 환경	농업연구사(농공)	농촌진흥청	1	725
국가 식이 데이터 활용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농촌진흥청	1	726
농업생태 기후변화	농업연구사(농업환경)	농촌진흥청	1	727
작물재배생리	농업연구사(작물)	농촌진흥청	3	728
작물 디지털 농업	농업연구사(작물)	농촌진흥청	3	729
데이터 활용 디지털 축산	농업연구사(축산)	농촌진흥청	2	730
농업용 로봇, 인공지능	농업연구사(농공)	농촌진흥청	3	731
영상 디자인	방송무대주사보(방송무대기술)	교육부	1	732
학예연구	학예연구사(학예일반)	문화재청	1	733
민속일반	학예연구사(학예일반)	문화체육관광부	2	734
전파자원 연구개발 및 전파이용 환경 조성	공업연구사(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735
우주전파환경 관측 및 예보	방송통신주사보(통신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736
보건관리_중부청 및 청 소속기관	보건주사보(보건)	고용노동부	2	737
보건관리_대구청 및 청 소속기관	보건주사보(보건)	고용노동부	1	738
보건관리_광주청 및 청 소속기관	보건주사보(보건)	고용노동부	3	739
보건관리_강원지역 소재기관	보건주사보(보건)	고용노동부	1	740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의료기술주사보(의료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	1	741
감염병 예측/위험분석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질병관리청	1	742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질병관리청	1	743
보건의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사서주사보(사서)	질병관리청	1	744
사서	사서주사보(사서)	교육부	1	745
수의	수의주사보(수의)	농림축산식품부	20	746
심리상담_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경력관 나군	교육부	1	747
심리상담_창원대학교	전문경력관 나군	교육부	1	748
교정_임상심리	교위(교정)	법무부	12	749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원자력안전정책	공업주사보(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1	750
예비군 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교육부	1	751
국제조세	세무주사보(세무)	국세청	1	752
지하안전 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53
광산안전 관리	공업주사보(자원)	산업통상자원부	2	754
안전관리 연구	방재안전연구사(안전관리)	행정안전부	1	755
재난관리 연구	방재안전연구사(재난관리)	행정안전부	1	756
전기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연구사(전기)	산업통상자원부	1	757
공공데이터 관리	전산주사보(데이터)	고용노동부	1	758
국세분야 빅데이터 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국세청	1	759
국세분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전산주사보(전산개발)	국세청	2	760
전산 빅데이터 분석	교위(교정)	법무부	1	761
전산개발	전산주사보(전산개발)	보건복지부	1	762
빅데이터 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외교부	1	763
전산개발	전산주사보(전산개발)	질병관리청	1	764
빅데이터 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행정안전부	1	765
데이터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766
건축 시설물관리	시설주사보(건축)	국가보훈처	1	767
토목시설 분야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가보훈처	1	768
공사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69
농업 시설정비 및 개발	시설주사보(농업토목)	농림축산식품부	2	770
대북·통일	행정주사보(일반행정)	통일부	2	771
화공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연구사(화공)	산업통상자원부	1	772